

(축산차량등록으로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구축)



최 정 록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장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 1,055만 마리가 살처분 및 매몰되는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이 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혼란을 초래했다. 살처분된 1,055만 가축 중 오리는 290만 마리로서 약 27%를 차지하여 오리농가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구제역 사태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 부담 및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구제역 대응과정에서 가축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결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구제역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조사되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관리가 가축질병 방역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 등 가축질병을 조기

에 차단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코자 “11. 5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차량등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원인 조사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련차량을 등록하고 이동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첫째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즉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스티커와 GPS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둘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는 축산법규, 가축방역 등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GPS전원을 켜놓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

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차량등록자의 개인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차량이 이동한 모든 정보는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단말기에 저장되며 이중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한 정보만 중앙시스템(KAHIS)에 수집이 된다. 또한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는 3개월 마다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리고 수집된 출입차량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통신비 월 9,900원(단말기 포함) 중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차량등록콜센터(1544-3925)를 운영하고 주기적 방문차량 약 15,000대의 소유자와 운전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또한 국가동물방역정보시스템(KAHIS)내에 Q&A 코

너를 운영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 및 지자체 담당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농식품부나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만으로 정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축산차량관련 여러 이해관계자가 뜻을 같이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구제역을 겪고 난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 시행된 것인 만큼, 시행초기 불편함과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을 생각해 볼 때 이해와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 제도는 현재 시·군·구에서 등록접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GPS단말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정부도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